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안 경 희*

차 례

- I. 머리말
- II.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 III.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IV.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제1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범정하고 있다(제6조).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민법 제823조에 따른 과실책임과 비교해 볼 때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경감되어 있다(제9조).

손해배상책임의 방법,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배상청구권자는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이고, 배상의무자는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한 시설의 사업자이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책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임은 무한책임인데 반하여 동법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보험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제7조 제1문).

I. 머리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¹⁾)’이 제정되어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하고는²⁾-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법명에 상응하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배상책임은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가운데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제1차적인 목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잠정적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배상책임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목적이 손해 전보와 피해 예방에 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목적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특별법의 가치는 전보와 예방이라는 효과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차별화되는 요소,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특화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III)과 제한(IV)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핵심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의의(II)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1) 본고에서 법명의 언급 없이 인용된 법조문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규정이다.

2)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I.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제6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의무를 말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와 ‘배상책임’이라는 두 개의 법률용어가 결합된 복합명사인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는 이 두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용어는 일반적인 언어용례와 개별 법률규정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1. 손해의 의의

‘손해’는 민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는 ‘피해’라는 용어가 법정되어 있다. 그밖에 환경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방해’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손해와 피해·방해와의 상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와의 구별

일반적인 언어용례에 따르면 ‘손해’는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피해’는 재산, 명예, 신체상의 손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³⁾ 이에 비하여 법률용어로서 손해란 일정한 사태에 의하여 사인이 입은 모든 불이익⁴⁾ 또는 법익에 관하여 받는 불이익⁵⁾을 의미하고, 민법문헌과 판례에서는 손해를 -차액설에 근거하여-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그 가해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 그런가 하면 유럽불법행위법원칙 제2:101조는 “배상 가능한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피해를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 이회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1, 1678면, 3096면.

4) Weber, Klaus (Hrsg.), *Rechtswörterbuch*, 16. Aufl., München, 2000, S. 1136.

5) 오세경, 「법률용어사전」, 법진출판사, 2012, 406면.

6) 대법원 1992.6.13. 선고 91다3307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박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107면;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5, 924면; 민법주해(IX)/지원림, 2000, 468면;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6, 973면;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14, 155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1034면.

있는데, 이 규정에서 손해(damage)는 법적인 개념, 피해(harm)는 자연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⁷⁾ 이러한 용례에 비추어 볼 때 피해는 손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모든 불이익을 의미하고, 민법상 손해는 이러한 피해 가운데 사익(재산, 명예, 신체 등)에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비롯한 환경관련 법률에는 피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가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하던 광산보안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광해를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는 사익은 물론 널리 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사전적인 용례 및 법률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와 손해는 유사한 개념이나, 전자는 환경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후자는 가해행위의 결과 피해자의 법익에 발생한 불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일상회화 및 공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규정에서는 피해라는 용어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규정에서는 손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 상응하게 손해배상(사법상 책임)

7) EGTL/Koziol, Art. 2:101 Rn. 1 f.; Koziol, Helmut, Die “Principal of European Tort Law” der European Group on Tort Law”, *ZEuP* 2004, S. 234, 241; Magnus, Ulrich, Comparative Report on the Law of Damages, in: ders.(Ed.), *Unification of Tort Law: Damages*, Den Haag, 2001 p. 185, 217.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공법상 책임)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피해라는 용어가 법문에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순수한 환경침해가 민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법상 손해와 피해는 모두 개인적 법익의 침해, 즉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비자발적인 불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주에서는 손해와 피해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해와의 구별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책임과 방해배제책임으로 대별되므로, 손해·피해와 방해의 구분도 중요하다. 다수설⁸⁾ 및 관례⁹⁾는 ‘방해상태의 현존’이라는 척도로 방해와 손해를 구분하여, 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제거되어야 하는 ‘방해’가 존재하고, 방해 상태가 종료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전보받아야 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¹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으로, 방해배제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의미는 이러한 귀책요건과 연결

8) 강대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620면;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0, 388면; 김중환/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2008, 295면; 김형배/김규완/김명숙, 전게서, 2015, 602면; 민법주해(V)/양창수, 2000, 246면;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05, 36면; 박종찬, 「물권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295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6, 697면; 양형우, 전게서, 2016, 576면;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379면;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258면;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568면;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449면; 주석민법(물권1)/정권섭, 2001, 506면; 지원범, 전게서, 2016, 609면;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10, 153면. 독일의 다수설이기도 하다: Brem/Berger, *Sachenrecht*, § 7 Rn. 28; Erman/Ebbing, § 1004 Rn. 85; Erman/Hefermehl, § 1004 Rn. 7; Jauernig/Jauernig, § 1004 Rn. 6; MünchKomm/Medicus, § 1004 Rn. 24; Palandt/Bassenge, § 1004 Rn. 27; RGRK/Pikart, § 1004 Rn. 33; Schwab/Prütting, *Sachenrecht*, Rn. 577; Soergel/Mühl, § 1004 Rn. 113; Strunden, *Alltlasten*, S. 210 f.; Vieweg/Werner, *Sachenrecht*, § 9 Rn. 17; Wieling, *Sachenrecht*, S. 369.

9) 대법원 1963.1.31. 선고 62다878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독일의 관례도 기본적으로 손해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지만, 방해는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RGZ 51, 408, 411; RGZ 127, 29, 35; BGHZ 19, 126, 130; BGHZ 28, 110.

10) 방해와 손해의 구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경희,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36권 2호(2014), 187-190면 참조.

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가령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같이 방해자의 행위책임과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고려되는 사안에서는 손해와 방해의 구분여하에 따라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요증사실(귀책사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의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방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피해자들이 입증의 부담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것이고, 그 결과 불법행위책임이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하여 무과실책임이 상호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해배제와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효과를 제외한다면- 책임요건과 입증책임 면에서 피해와 방해의 구분은 중요하지 아니다. 예컨대 비행장소음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생활방해는 물론이고 이른바 공작물의 기능적 하자에 따른 손해도 고려될 텐데, 이들은 모두 방해자 내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므로 피해와 방해를 구분할 실익은 거의 없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상책임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민법상 생활방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아니한다.

(3) 소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는 ‘내용면’에서 볼 때 민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방해 내지 손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으로 환경오염피해라는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또 하나’의 법률규정이 마련 되었으므로, 이들 규정 상호간의 관계, 특히 제6조와 민법 제758조의 경합이 문제된다. 규율대상에 비추어 볼 때 후자는 널리 공작물(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시설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규정이고, 전자는 법정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므로, 양자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한이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범위는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제7조 본문)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청구권 경합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한다.

2. 배상책임의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으로, 피해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환경오염피해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처해 있을 상태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¹¹⁾ 이 전보의 방법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3조 본문),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단서).

(1) 금전배상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이외의 자가 그 재산적·비재산적 피해를 금전으로 전보해야 한다('금전배상주의').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 자체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금전으로 산정하고(제1단계) 이어서 그 산정된 금전으로 피해를 전보하게 되는바(제2단계),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요증사실인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물론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2) 원상회복

환경오염피해가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고, 배상 금액에 비하여 원상회복비용이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원상회복주의'). 이 원상회복은 금전배상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두 가지의

¹¹⁾ 유럽불법행위법원칙 제10:101조 및 유럽손해배상법원칙 제6:101조에서도 손해배상의 목적이 원상회복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며, 이 두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여기에서의 원상회복은 -피해배상방법으로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사실상의 상태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따라서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사회통념상'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가령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 가스 등 유해물질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부식·훼손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대체급부로 동일사양의 중고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방법이 원상회복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재산적 피해, 특히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전적 배상만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배상 금액에 비하여 원상회복비용이 과도하지 아니해야 한다. 따라서 전술한 예에서 자동차가 단종된 모델이어서 수리에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제14조).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상 환경오염피해는 개인적 법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순수한 생태계 침해가 아니라- 개인적 법익의 피해를 수반하는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침해로 한정된다. 가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사유지인 자연생태계가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유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는 -제13조와는 달리- 원상회복가능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원상회복 청구의 요건으로 법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3조와 마찬가지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¹²⁾ Erman/Ebert, § 249 Rn. 1.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사업자에게 불가능한 급부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배상방법이 배상피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비용의 적정성도 여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양자의 관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으로 개인적 법익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법정채권), 피해자는 가해자(시설 사업자)를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제13조 본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13조 단서). 따라서 환경오염피해가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로의 회복가능성과 원상회복비용의 적정성이 담보된다면 피해자는 금전 배상과 원상회복 가운데 자유롭게 배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선택채권).¹³⁾

Ⅲ.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서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이 두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①일정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고, ②이 오염물질 등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③이러한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개인적 법익

¹³⁾ 결론에 있어서 동일: EGTL/Magnus, Art. 10:104 Rn. 4. 유럽손해배상법원칙에서도 피해자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금전에 의한 배상(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01조). 이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경희/이세경, 「EU 사법통일의 동향과 분석(2) -불법행위법-」, 한국법제연구원, 2007, 156-157면 참조.

에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오염물질 등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우선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소음·진동 등이 발생해야 한다.

(1) 시설책임의 명문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은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피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시설책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시설 및 전보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가) 시설

제3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따르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면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시설의 목록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다만 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도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비하여-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¹⁴⁾

나아가 동법상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제2조 제2호).¹⁵⁾ 따라서 동법상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제3조에 열거된

¹⁴⁾ 결론에 있어서 동일: 전경운, 전계논문, 2013, 363면.

¹⁵⁾ 3개의 법률안은 모두 시설에 대한 정의규정과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을 하나의 규정에서 다루었는데, 제2조 제2호는 이완영 의원안 제2조 제1호과 한정에 의원안 제2조 제2호를 절충한 형태이다.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가령 소음·진동배출시설 가운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등만이 동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시설의 설치’는 시설 자체를 건립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통상 시설의 설치는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종료하고, 시설을 원상그대로 복구하는 것도 설치에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시설의 운영’은 목적에 상응하게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업 개시 시점부터 정지 시점 까지가 운영에 해당한다.

(나) 사업자

시설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다(제2조 제3호). 이 규정에 따르면 시설 소유자 등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지배관계’에서 비롯되므로, 동법상 배상책임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시설(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상태책임’이다.¹⁶⁾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법상 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는 물권법적인 관계에서 도출되고, 여기에서의 소유자는 공시방법을 갖춘 법률상 소유자를 의미하는바, 시설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등기기록에 소유자로 기록된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공적인 장부에 공시된 자를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쉽게 확정되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 환경책임법, 원자력법 등에는 책임의 주체가 시설보유자로 되어 있고, 가령 원자력시설보유자는 영업허가서에 시설보유자로 기재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⁷⁾ 이에 비하여 제2조 제3호에서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책임의 주체로 법정하고 있어서, 예컨대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및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이들이 상이한 경우, 예컨대 폐기물 분야처럼 시설허가와 영업허가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김홍균, 「로스쿨 환경법」, 홍문사, 2016, 682면.

17) Freyemann, in: Geigel, Haftpflichtprozess, 23. Kapitel, Rn. 6; Hoppe/Beckmann/Kauch, Umweltrecht, § 24 Rn. 143; Junker,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AtomG, B 18 Rn. 10.

나아가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먼저 이 의미를 전술한 상태책임의 근거가 되는 ‘시설에 대한 지배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상태의 유지와 피해원인의 제거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시설 소유자나 설치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하는 시설을 임대했고, -계약해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하는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에게도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직접점유’로 해석한다면,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시설이 임대 내지 위탁 경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직접점유자인 임차인 내지 위탁경영인이 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런가 하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와 관리권한을 결합하여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다. 가령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의 경우에,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¹⁸⁾ 점유자 중에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¹⁹⁾,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점유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소유자가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해한다면, 전술한 임대·위탁경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임차인 내지 위탁경영인에게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만,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시설을 보수·관리할 권한이 간접점유자 내지 소유자에게 있다면 이들에게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인정된다.

생각건대 사업자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특정 시설을 지배하는 데 따른 책임(상태책임)이라고 본다면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를 직접점유로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²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한 시설이 임대

18) 대법원 2000.4.21. 선고 2000다386 판결.

19) 대법원 1975.3.25. 선고 73다1077 판결; 대법원 1976.9.14. 선고 75다204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209 판결; 대법원 1993.1.12. 선고 92다23551 판결; 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 대법원 1994.07.29. 선고 93다32453 판결.

20) 기타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의 문제점은 안경희,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0권

· 위탁 경영되고 있는지, 시설에 대한 보수·관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 소유자·설치자와 운영자의 내부관계를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배상책임의 주체가 결정된다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면 시설 운영자(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임대·위탁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설 소유자·설치자(간접점유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²¹⁾

(2) 오염물질 등의 발생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등이 발생해야 한다. 가령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자상물질, 브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바나듐 및 그 화합물, 망간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등 6개의 물질(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그밖에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소음과 같은 에미시온(Emission)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요건은 충족된다.

2. 환경오염의 발생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오염물질 등으로 환경오염,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가 발생해야 한다(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이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제4호(2015), 50-52면 참조.

21)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 환경책임법상 책임의 주체인 시설보유자에는 시설에 대한 법적 지배관계에 있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자기의 계산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유지비용을 조달하는 등 사실상·경제적 지배관계에 있는 점유자, 임차인 등도 포함된다: Kötz/Wagner, *Deliktsrecht*, Rn. 517 f.; Landsberg/Lülling, *UmweltHR*, § 1 Rn. 58; Münkel, in: Geigel, *Haftpflichtprozess*, 24. Kapitel Rn. 46; Rehbindler, in: Landmann/Rohmer, *UmweltHG* § 1 Rn. 49.

동법 제3조 제3호에서는 환경오염의 예로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이 범정되어 있다.

이처럼 두 법률에 환경오염이라는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규율방식도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법에 규정된 대기오염 등은 환경오염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제3조에 열거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환경오염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술한 시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피해 발생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 포함²²⁾) 및 재산에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 포함)가 발생했어야 한다(제2조 제1호 본문).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된다(제2조 제1호 단서). 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이므로, 논리필연적으로 동법상 보호받는 법익인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요건으로 한다(‘결과불법’).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제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 가령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통상 그 대상에 따라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구분되는데, 환경오염 피해구제법도 이러한 손해구분에 상응하게 피해를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인적 손해)와 재산에 대한 피해(물적 손해)로 이분하고 있다. 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²²⁾ 정신적 피해는 생명·신체 피해에 포함되는 것인데, 법문에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를 명기한 것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에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김승희,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한국환경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자료집』, 2014, 199면.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는 제외된다. 아울러 해당 시설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도 환경오염피해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될 따름이다.

4. 책임발생적 인과관계

전술한 3가지의 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시설로부터 오염물질 등이 발생했고(1단계), 그 오염물질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며(2단계) 그로 말미암아 개인적 범익에 피해가 발생했어야 한다(3단계).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 피해자가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가 이 3단계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란 용이하지 아니하다. 통상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 측에서 1단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정한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지적으로 열세인 피해자가 당해 원인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한 경로(제2단계) 및 그로 말미암은 피해(제3단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입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9조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표제 하에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규정에 따르면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항),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2항).²³⁾

(1) 개연성설의 명문화

종래 문헌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

²³⁾ 이완영 의원안 제6조와 한정애 의원안 제6조 제2항에서도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환경부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범문으로 확정되었다.

기 위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²⁴⁾, 입증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에서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으로 완화·경감시키는 이론(‘개연성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²⁵⁾ 대법원도 아황산가스로서 인한 과수 결실의 불량저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한국전력사건²⁶⁾에서 개연성설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한 이래 개연성설 또는 신개연성설²⁷⁾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다.²⁸⁾ 제9조 제1항도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개연성설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판례가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법적 근거의 결여로 요건이 분명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²⁹⁾, 제9조에

24)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한 학설에 대하여는 안경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환경법연구』, 제28권 3호(2006), 38면 이하 참조.

25) 개연성설은 -사실적 추정론이나 증거우월론을 이론적 근거로- 환경침해로 인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구연창,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환경법연구』, 제11권(1989), 163면; 권용우, “공해의 예방 및 배제청구”, 『법과공해-오늘과 내일-』, 한국법학교수회, 1974, 177면;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2호(2003), 371면; BGH NJW 1970, 1971; Arens, Peter, Dogmatik und Praxis der Schadensschätzung, ZJP 88(1975), 1, 27 ff.; Hager, Günter, Umweltschäden - ein Prüfstein für die Wandlungs- und Leistungsfähigkeit des Deliktsrechts., NJW 1986, 1961, 1968; Marburger, Gutachten, C 123 f.; Walter, Gerhard, Anmerkung zum BGH-Urteil vom 16.12.1977 (Fluorabgasfall), NJW 1978, 1158, 1159.

26) 대법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

27) 신개연성설은 인과관계인정에 필요한 주요주체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을 ①피해발생의 메커니즘과 원인물질(病因論) ②원인물질의 피해자에의 도달경로(오염경로) ③가해공장에서의 원인물질의 생성 및 배출(배출행위)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원고가 세 가지 중 어느 두 가지를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면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 피고가 원고가 행한 간접사실의 증명을 동요시키든가(반증) 혹은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간접반증)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구연창, 전개논문, 1989, 166면; Lytras, Haftung, S. 248 f.; Marburger, Peter/Hermann Heinrich, Zur Verteilung der Darlegungs- und Beweislast bei der Haftung für Umweltschäden, JuS 1986, 354, 358.

28) 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5다2692 판결;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다2123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12. 선고 88나3049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2. 선고 88가합2897 판결; 인천지방법원 1999.8.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0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사실상 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 책임의 귀속 여부가 확정되는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가 책임 발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제9조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경감시킨 것은 일응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동규정을 개연성설을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해자(원고)의 입증의 정도만 상당한 개연성으로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여 가해자(피고)가 부담하는 반증도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으로 경감되므로³⁰⁾, 결국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반증에 성공하면, 결국 피해자는 다시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 고도의 개연성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9조의 등장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요컨대 종래 학설·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온 개연성설을 성문화하여 제9조 제1항에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법원이 이미 개연성설·신개연성설에 따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9조 제1항의 신설로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소송실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는 ‘현상유지’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개연성설·신개연성설에 따라 사실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보다 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했다면, -해석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제9조를 법률상 추정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법정했어야 할 것이다.

²⁹⁾ 안경희, 전계논문, 2006, 4면;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제1호(1994), 64면; Hübner, Ulrich, Haftungsprobleme der technischen Kontrolle, *NJW* 1988, 441, 452; Mühl, Otto, Wahrscheinlichkeitsurteile, Prognosen und Kausalitätsfragen im privaten und öffentlichen Recht, in: *FS Hermann Lange zum 70. Geburtstag*, Stuttgart, 1992, 582, 597

³⁰⁾ Baumgärtel/Baumgärtel, *Beweislast*, § 906 Rn. 10; Baumgärtel, Gottfried, Anmerkung zum BGH-Urteil v. 18.9.1984 -VI ZR 223/82 (Kupolofen-Urteil), *JZ* 1984, 1109, 1110.

(2) 개연성 판단기준의 명문화

제9조 제2항에서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예시된 개연성 여부를 판단기준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도움 없이 가령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게 완화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제2항에 법정된 기준들은 종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온 개연성의 기준들³¹⁾을 입법화한 것이어서, 이 규정의 신설이 소송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종래 문헌에서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상당한 폭을 갖는 것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는 경우에 개연성의 입증에 도달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바³²⁾, 제9조 제2항의 신설로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추정의 배제

제9조 제3항에서는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를 법정하고 있다. 즉 ①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은 배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입증한 경우에, 가해자가 반증으로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명문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인과관

³¹⁾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³²⁾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 16. Aufl., München, 2004, § 114 Rn. 19; 구연창, 전계논문, 1989, 1989, 165면; 정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25권 2호(2003), 419면; 홍천룡,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14권(1992), 30면.

계 추정은 반복된다. 따라서 ①을 추정배제사유로 법정한 것은 당연한 것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와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 준수’는 산업계의 요구로 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의 이른바 정상운영(ein bestimmungsgemäßiger Betrieb)을 추정배제사유로 부가한 것이다.³³⁾ 이 두 사유는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준수하고 …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양자를 모두 충족했을 때 비로소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된다. 독일 환경책임법상 정상운영은 시설보유자가 특별한 운영의무를 준수하고 운영장에도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데(동법 제6조 제2항 제2문), 여기에서 특별한 운영의무란 환경오염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적인 허가, 부담, 집행가능한 명령 및 법령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동조 제3항). 그리고 이러한 허가 등에서 특별한 운영의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규제수단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 ① 당해 환경오염피해가 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규제가 실시되었으나 운영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 당해 환경오염피해가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시설보유자가 운영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조 제4항).

정상운영을 한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된다면 -입증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완전자에 증명해야 하므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산업계에서 정상운영을 인과관계 추정 배제사유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로비를 했었다. 그런데 비단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이 도입된 것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이 규정의 신설로 환경오염피해가 예방 내지 감소될 것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상당히 작용했다.³⁴⁾ 아마 입법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되면 시설보유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평상시에 허가 조건 및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의무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정상운영

³³⁾ 환경부안 제9조 제3항과 이완영 의원안 제6조 제3항에서는 “환경오염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는 규정만 두고 있었으나, 정상운영(Normalbetrieb) 시에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고 있는 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와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 준수’가 부가되었다.

³⁴⁾ BT-Drucksache 11/7104, S. 18.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작업과정을 통제하고 배출량을 문서로 기록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가 감소하리라는 법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상운명을 인과관계 추정 배제사유로 법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업들이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바, 이로 말미암아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책임의 배제

제6조 단서에서는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업자를 면책시키고 있다.³⁶⁾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³⁷⁾ 및 통상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항력을 책임배제사유로 법정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6. 귀책사유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으로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전술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사업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작물의 소유자가

35) 환경책임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작업의 전과정을 문서화 하는 등 정상운명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비용은 증가하였지만, 이 규정에 근거하여 추정이 배제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된 상세는 안경희, 전계논문, 2015, 65-66면 참조.

36) 이완영 의원안 제4조 제1항 단서, 환경에 의원안 제6조 제1항 단서에서도 전쟁 등 불가항력을 면책사유로 법정했고, 김상민 의원안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및 그 종업원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37) 이런 이유로 독일 환경책임법 제4조에서도 불가항력이 면책사유로 법정되어 있다: BT-Drucksache 11/7104, S. 17.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와 같이- 단순히 가해자의 귀책사유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책임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이 아니라, -독일 환경책임법상 무과실책임과 같이³⁸⁾-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⁹⁾

독일법상 위험책임은 ‘특별한 위험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원의 지배·운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⁴⁰⁾ 근대민법의 3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과실책임의 원칙 내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귀책사유가 없는 가해자에게 이러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위험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이익을 얻은 자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⁴¹⁾ 그런데 시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가중된 책임에 해당하는바, 위험시설과 관련된 산업을 장려하고 시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배상 책임도 화학공장 등 위험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귀책근거),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책임요건) 및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배상책임의 한도가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책임범위의 한정)에 비추어 볼 때 독일식의 위험책임에 해당한다

³⁸⁾ Balensiefen, *Umwelthaftung*, S. 221; Fucks/Pauker, *Deliktsrecht*, S. 295; Hoppe/Beckmann/Kauch, *Umweltrecht*, Rn. 74; Kloepfer/Brandner, *Umweltrecht*, 3. Aufl., 2004, Rn. 60; Landsberg/Lülling, *UmweltHR*, § 1 Rn. 1; Lytras, *Haftung*, S. 442; Münkkel, in: Geigel, *Haftpflichtprozess*, 24. Kapitel Rn. 37; Rehbinder, in: Landmann/Rohmer, *UmweltHG* § 1 Rn. 4.

³⁹⁾ 김현준,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제26호(2013), 33면;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호 제2호(2015), 145면; 김홍균, 전거서, 2016, 680면; 안경희, 전거논문, 2015, 42-48면; 전경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5권 2호(2013), 369면; 정남철, “새로운 환경책임법제의 도입과 피해구제절차의 문제점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 3호(2015), 266면;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 제26호, 사법발전재단, 2013, 125면.

⁴⁰⁾ Ehmann, *Deliktsrecht*, S. 116 f.; Fucks/Pauker, *Deliktsrecht*, S. 255; Kloepfer/Brandner, *Umweltrecht*, Rn. 78; Kötz/Wagner, *Deliktsrecht*, Rn. 491; Rehbinder, in: Landmann/Rohmer, *UmweltHG* § 1 Rn. 6.

⁴¹⁾ Ehmann, *Deliktsrecht*, S. 117; Fucks/Pauker, *Deliktsrecht*, S. 255 f.; Kötz/Wagner, *Deliktsrecht*, Rn. 498 ff.

고 볼 수 있다.

7. 위법성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불법행위의 객관적인 성립요건인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령 물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절대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일용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환경오염행위는 가해자의 적법행위의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받으려면,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수할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⁴²⁾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무과실의 위험책임이라고 본다면, 손해 발생 외에 이러한 의미에서의 위법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문헌에서는 위험책임도 환경오염피해라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도 하고⁴³⁾, 위험책임은 고의·과실은 물론 -그러한 위험원의 지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⁴⁴⁾ 생각건대 환경

42) 수인한도론에 대하여는 안경희, “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 -민법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2015), 265면 이하 참조.

43) von Bar, *Verkehrspflichten: Richterliche Gefahrsteuerungsgebote im deutschen Deliktsrecht*, Köln, 1980, S. 131 ff.; von Seiler, “Tierhalterhaftung, Tiergefahr und Rechtswidrigkeit”, in: *FS für Zeuner*, 1994, S. 279, 292; Staudinger/Eberl-Borges, § 833 Rn. 25.

44)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2004), 227-228면; 안경희, 전계논문, 2015, 46-47면, 이태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조 -고의, 과실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23권(2006), 257면; 전경운, 전계논문, 2013, 368면; 한상운, 전계논문, 2013, 119면; BGHZ 105, 65, 66; BGHZ 107, 359, 367; Hoppe/Beckmann/Kauch, *Umweltrecht*, Rn. 92; Deutsch, *Haftungsrecht*, Rn. 9; Fucks/Pauker, *Deliktsrecht*, S. 255; Kötz/Wagner, *Deliktsrecht*, Rn. 491; Münkel, in: Geigel, *Haftpflichtprozess*, 24. Kapitel Rn. 37; Larenz/Canaris, *Schuldrecht*, II/2 § 84 I 3a; Medicus, *Bürgerliches Recht*, Rn. 604; Rehbinder, in: Landmann/Rohmer, *UmweltHG* § 1 Rn. 17 ff.; Röthel, Anne, *Gefährdungshaftung*, *JURA* 2012, 444; Staudinger/Hager, Vorbemerkung §§ 823 ff. Rn.

오염피해로 인한 무과실책임은 사후적인 권리구제수단에 속하므로 개인적 범익에 대한 피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결과불법). 다만 위험책임은 ‘허용된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범익침해 외에 수인한도론, 기능적하자론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이익형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⁴⁵⁾ 요컨대 제6조의 책임을 위험책임이라고 본다면, 시설 사업자의 과실은 물론 위법성이 없이도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시설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 결과 수인한도 내에 있는 (적법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남소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⁴⁶⁾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독일 환경책임법 제5조에서는 시설이 정상운영되는 과정에서 물건이 경미하거나 지역적 관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정도로 침해된 경우에는 -즉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인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법정하고 있다. 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독일식의 위험책임이라고 보는 한,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면책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IV.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배상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가 모두 배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동법은 가해자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제7조), 사업자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배상에 관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규정된 것을

28.

45) 결론에 있어서 동일: MünchKomm/Wagner, Vorbemerkung zu § 823 Rn. 19 f.

46) Landsberg/Lülling,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DB 1990, 2205, 2207 f.; Lytras, Haftung, S. 463.

제외하고는 민법규정이 적용되므로(제5조 제1항)- 민법규정 및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산정된 피해를 배상하면 된다(사업자의 금액유한책임). 따라서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분석하려면 민법상 손해산정 및 손해배상의 범위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1. 민법상 손해의 산정

(1)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의 산정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는 사망, 신체상해 및 정신적 손해를 말하는데, 이러한 인적 손해는 크게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적극적 재산적 손해

장례비, 의약품 구입비, 입원비, 진단적 검진비용 등과 같은 재산상 불이익이 적극적 재산적 손해에 속한다. 실무에서는 -차액설에 따라 추상적으로 산정해서- 손해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피해로 간주한다.⁴⁷⁾ 이러한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액수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⁴⁸⁾ 그런데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거나 증명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가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⁴⁹⁾ 물론 이러한 법원의

47)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25695.

4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4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유럽불법행위법원칙 제2:105조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을 받아들여-손해는 일반 소송상의 기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EGTL/Magnus, Art. 2:105, Rn. 5).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⁵⁰⁾

(나) 소극적 재산적 손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장차 벌 수 있었던 수입은 소극적 재산적 손해에 속한다. 통상 사망 또는 상해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소득상실(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합계) 또는 가동능력 상실(사람의 가동능력의 상실)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가령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⁵¹⁾,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 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⁵²⁾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

⁵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1398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⁵¹⁾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⁵²⁾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1806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하다.⁵³⁾ 나아가 법원의 석명권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⁵⁴⁾

(다)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측량하여 그러한 고통이 어느 정도의 금전(위자료)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전술한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위자료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⁵⁵⁾, 법관이 재판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그 액수를 결정한다.⁵⁶⁾ 물론 그렇다고 하여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하므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⁵⁷⁾ 그 결과 통상 피해자 측의 사정(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과 가해자 측의 사정(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및 불법행위의 특수성⁵⁸⁾ 등을 고려하

5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5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대법원 2008. 2.1 4. 선고 2006다3789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55) 바로 이러한 입증의 용이함 때문에 비행장 소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대부분 위자료청구 소송이다.

5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판결.

5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여 위자료가 산정된다.

(2) 재산에 발생된 손해의 산정

재산에 발생된 손해는 피해자의 재산 감소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재산에는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체·무체재산은 물론 물건사용권도 포함된다.⁵⁹⁾ 이러한 손해도 -전술한 적극적 재산적 손해와 마찬가지로- 통상 차액설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산정되고,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액수를 입증해야 한다.

2.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1) 제한배상주의

민법은 -완전배상주의⁶⁰⁾가 아니라- 제한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 손해가 모두 전보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해(‘통상손해’) 및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⁶¹⁾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만 배상된다(민법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객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⁶¹⁾ 환경오염피해

⁵⁸⁾ 가령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승객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 및 고통의 정도가 자동차 사고 등 다른 사고보다 중한 점, 항공기 사고에 관한 책임의 소재, 범위, 배상액을 둘러싸고 항공운송인 측과 피해자 측의 견해 차이로 최종적인 피해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 항공기 사고는 사고지역 및 피해자의 국적분포에 있어서 국제성을 띠고 있어 동일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피해자들 사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항공기 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항공보험 및 재보험 제도는 동일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⁵⁹⁾ GTL/Magnus, Art. 10:201, Rn. 4.

⁶⁰⁾ 이에 비하여 독일민법은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무자는 배상의무를 발생시킨 사정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회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독일민법 제249조 제1항). 다만 신체의 침해나 물건의 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이에 필요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고(제249조 제2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251조 제1항).

가 통상손해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른바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상당인과관계설’)⁶²⁾뿐만 아니라 규범목적, 가해행위의 모습, 가해의 정도 등(‘규범목적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⁶³⁾ 가령 판례는 통상손해에 속하는 치료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⁶⁴⁾ 전술한 바와 같이 제9조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책임발생적 인과관계에 한정되는 것이고, 책임의 범위에 관한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⁶⁵⁾ 이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되므로(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한 특별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령 판례는 전술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⁶⁶⁾ 이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불법행위자 자신을 기준으로 당해 불법행위에서 당사자의 직업, 목적물의 종류, 당사자들이 속하는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⁶⁷⁾,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특별

6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62) 좌윤직, 전게서, 2003, 115면; 송덕수, 전게서, 2016, 1014-1015면; 양형우, 전게서, 2016, 979면.

63) 정기웅, 전게서, 2014, 163면; 지원림, 전게서, 2016, 1048-1049면.

64)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40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6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66)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한 사정의 존재'이므로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⁶⁸⁾ 이 특별사정의 존재 및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부담한다.

(2) 무한책임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신의 전재산(일반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금액유한책임

(1) 입법취지

시설 사업자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가중된 민사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기업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⁶⁹⁾ 제7조에서는 금액유한책임을 법정하고 있다.⁷⁰⁾ 동법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한 구미 불산누출사고에서 보듯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동종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는 한 사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시설 사업자의

67) 광윤직, 전계서, 2003, 115면; 김형배/김규원/김명숙, 전계서, 2015, 932면; 송덕수, 전계서, 2016, 1017면; 오시영, 「채권총론」, 학현사, 2009, 269면; 정기웅, 전계서, 2014, 167면; 지원림, 전계서, 2016, 1054면.

6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69) 김승희, 전계발표문, 2014, 183, 186, 199면;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사법」, 제26호(2013), 90면; 김홍균, 전계논문, 2015, 150면; 한상운, 전계논문, 2013, 121-122면; 함태성,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제26호(2013), 57면.

70) 김상민 의원안과 한정에 의원안에서는 배상책임한도 규정이 없었으나, 환경부안 제5조와 이완영 의원안 제5조에서는 2천억 원을 책임한도로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제7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한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금액유한책임

제7조 본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⁷¹⁾ 현실적 규모의 배상책임금액을 2천억 원으로 법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별로, 가령 생명·신체에 발생된 피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각각 최고 2천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법문에 독일 환경책임법 제15조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각각 8,500만 유로(약 2,400억원)를 책임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2천억 원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²⁾

나아가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⁷³⁾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는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법정된 시설을 가, 나, 다 3개의 군으로 구분하고, 가군 시설의 경우에는 2천억 원, 나군 시설의 경우에는 1천억 원, 다군 시설의 경우에는 5백억 원을 배상책임한도로 법정하고 있다. 이 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별표 2] 비교 1.). 그리고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보고([별표 2] 비교 3.),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별표 2] 비교 4.).

(3) 무한책임

⁷¹⁾ 김승희, 전계발표문, 2014, 200면.

⁷²⁾ 결론에 있어서 동일: 김홍균, 전계논문, 2013, 90면; 김홍균, 전계논문, 2015, 150면; 김홍균, 전계서, 2016, 686면.

⁷³⁾ 김승희, 전계발표문, 2014, 183면.

시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⁷⁴⁾ 제7조 단서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호), 관계 법령 미준수의 경우(제2호), 환경오염피해 방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에는 사업자에게 무한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⁷⁵⁾ 이 단서 규정은 금액유한책임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법정된 사유로 한정된다(열거주의).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상 가해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무한책임). 이에 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무과실 또는 경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천억 원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면 무한책임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르면 금액유한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일반법상 책임이 특별법상 책임보다 가중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민법상 배상책임에 비하여- 가중된 책임을 물으면서, 경과실의 경우에는 -민법상 책임에 비하여- 감경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⁷⁶⁾ 나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경과실 또는 중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해자인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와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것은 -사업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에 책임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제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미준수의 경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

74) 김홍균, 전계논문, 2015, 152면; 김홍균, 전계서, 2016, 687면.

75) 이완영 의원안 제5조 단서가 거의 원안 그대로 성문화되었다.

76) 결론에 있어서 동일: 전경윤, 전계논문, 2013, 372면; 함태성, 전계논문, 2013, 57면.

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이 제2호의 사유는 수인한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 가운데 ‘기준치 준수여부,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에서 검토되는 내용이다. 가령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을 배출하였다면 -물론 수인한도론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 형량을 근간으로 하므로, 기타 수인한도의 여러 판단요소들을 비교·교량해야 비로소 수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당해 소음배출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수인한도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인한도의 여러 판단요소들(가령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기준치 준수여부,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사이에 경중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수인한도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이 기준의 충족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런가 하면 제2호의 사유를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이해한다면 사업자가 배출허용한도 내에서 소음을 배출하였다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유한책임을 부담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을 배출한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6조의 사업자책임을 단순한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위험책임으로 해석한다면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효과인- 책임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불법행위법 체계에 상응하지 아니한다.

(다) 환경오염피해 방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가 무한책임으로 확장된다. 이 제3호의 사유도 수인한도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판단기준 가운데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므로 전술한 제2호 사유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3호 사유는 -결과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방지시설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지의무위반설’⁷⁷⁾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제3호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결국 무과실

의 경우에는 금액유한책임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1호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무한책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제1호와 제3호가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제6조에서 무과실책임을 법정하여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했는데, 성립요건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과실 유무에 따라서 책임의 내용이 좌우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요컨대 제7조 단서에서 법정하고 있는 금액유한책임의 예외에 해당하는 3가지의 사유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목적(제1조), 무과실책임(제6조) 및 금액유한책임(제7조)의 입법취지 나아가 불법행위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제7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7조 단서를 법정한 이유가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제1호), 환경오염피해가 위법한 경우(제2호, 제3호) 및 가해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제3호)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제7조 단서가 없더라도 이러한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V. 맺음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책임 발생’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제2조 제1호),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을 한정하며(제2조 제2호), 책임 주체를 사업자로 확정함으로써(제2조 제3호, 제6조) 피해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비교적 명확하게 책임요건이 법정되어 있다. 아울러 법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지만 위험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에게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제6조), 사업자에 비하여 지적·경제적 열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인과관계 추정 규정(제9조)을 둬으로써 형평성

77) 대법원 1973.5.22. 선고 71다2016 판결.

내지 공정성도 고려되고 있다. ‘책임 제한’의 측면에서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사업자가 배상하되, 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한정함으로써(제7조) 피해자 및 사업자의 이익을 비교적 균형 있게 교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법의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명확성이 확보되지는 못하고 있다. 가령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조 제3호에서 책임의 주체인 사업자를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로 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무엇인지, 사업자(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 상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법률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면 가해자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결국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런가 하면 제7조 단서에서는 금액유한책임의 예외를 범정하고 있는데, 동법상 청구권과 민법상 청구권의 경합관계가 되므로(제5조 제2항), 예컨대 피해자가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의 부담이 없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의 제한이 없는-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둘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정채권에 관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므로, 문제가 되는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 내지 삭제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입법자의 결단(법률규정)에 구속된다. 결국 규정의 불명확성, 모순 등은 해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을 할 때에는 특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 및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가령 시설책임, 위험책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9조에서 인과관계 추정 및 추정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래의 개연성설 내지 신개연성설에 의하는 것보다 완화된 형태로- 사실상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배상책임을 위험책임이라고 본다면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불가항력을 책임배제사유로 범정하고는 있으나 불가항력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불가항력과 사업자의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논문투고일 : 2016. 7. 31. 심사일 : 2016. 8. 11. 게재확정일 : 2016. 8. 22.

참고문헌

-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V)」, 박영사, 2000(인용: 민법주해(V)/집필자).
-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IX)」, 박영사, 2000(인용: 민법주해(IX)/집필자).
-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0.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2008.
-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5.
- 김홍균, 「로스쿨 환경법」, 홍문사, 2016.
-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05.
- 박종찬, 「물권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 박준서(편집대표),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인용: 주석민법(물권1)/집필자/정권섭).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6.
- 안경희/이세정, 「EU 사법통일의 동향과 분석(2) -불법행위법-」,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6.
- 오세경,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2012.
-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 오시영, 「채권총론」, 학현사, 2009.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1.
-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14.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10.

- 구연창,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환경법연구」, 제11권(1989).
- 권용우, “공해의 예방 및 배제청구”, 「법과공해-오늘과 내일-」, 한국법학교수회, 1974.
- 김승희,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한국환경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자료집」(2014).
- 김현준,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제26호(2013).
-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2004).
-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사법」, 제26호(2013).
-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2015).
- 안경희, “공법상 배출허용기준의 사법상 의미”, 「비교사법」, 제11권 4호(2004).
- 안경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환경법연구」, 제28권 3호(2006).
- 안경희,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36권 제2호(2014).
- 안경희, “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 -민법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2015).
- 안경희,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2015).
-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제1호(1994).
- 이태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조 -고의, 과실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23권(2006).
-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2호(2003).
- 전경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2013).
- 정남철, “새로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의 도입과 피해구제절차의 문제점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 3호(2015).
- 정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2003).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 제26호(2013).

함태성,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제26호(2013).

홍천룡,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14권 (1992).

Balensiefen, Gotthold A., *Umwelthaftung*, Baden-Baden, 1994.

Bassenge, Peter(Bearbeiter),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München 2014 (인용: Palandt/집필자).

Baumgärtel, Gottfried, *Handbuch der Beweislast im Privatrecht*, Band 2, Köln, 1985 (인용: Beweislast).

Beckmann, Martin/Durner, Wolfgang/Mann, Thomas/Röckinghausen, Marc(Hrsg.), Landmann/Romer, *Umweltrecht*, Besonderer Teil, Kommentar, 66. Ergänzungslieferung, München, 2012 (인용: 집필자, in: Landmann/Romer, UmweltHG).

Brem, Wolfgang/Berger, Christian, *Sachenrecht*, Tübingen, 2000.

Brüggeleiter, Gert, *Deliktsrecht*, Baden-Baden, 1986 (인용: Deliktsrecht).

Danner, Wolfgang/Theobald, Christian (Hrsg.), *Energierecht. Kommentar*, 64. Ergänzungslieferung, München, 2009 (Zit.: Bearbeiter,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AtomG*).

Deutsch, Erwin, *Allgemeines Haftungsrecht*, 2. Aufl., Köln, 1996 (인용: Haftungsrecht).

Ehmann, Horst, *Lehrbuch Deliktsrecht mit Gefährdungshaftung*, München, 2014 (인용: Deliktsrecht).

European Group on Tort Law, *Principal of European Tort Law. Text and Commentary*, Wien, 2005 (인용: EGTL/집필자).

Fucks, Maximilian/Pauker, Werner, *Delikts- und Schadensrecht*, 8. Aufl., Heidelberg, 2012 (인용: Deliktsrecht).

- Geigel, Reinhard, *Der Haftpflichtprozess mit Einschluss des materiellen Haftpflichts*, 25. Aufl., München, 2008 (인용: 집필자, in: Geigel, Haftpflichtprozess).
- Gursky, Karl-Heinz(Redaktor),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Drittes Buch Sachenrecht §§ 985-1011, Berlin, 1993 (인용: Staudinger/집필자).
- Haag, Kurt(Hrsg.), Geigel, *Der Haftpflichtprozess. mit Einschluss des materiellen Haftpflichtrechts*, 26. Aufl., München 2011 (인용: 집필자, in: Geigel, Haftpflichtprozess).
- Habersack, Mathias(Redakteu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Schuldrecht · Besonderer Teil III §§ 705-853, 5. Aufl., München 2009 (인용: MünchKomm/집필자).
- Hoppe, Werner/Beckmann, Martin/Kauch, Petra, *Umweltrecht*, 2. Aufl., München, 2000.
- Horn, Norbert(Redaktor),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Zweites Buch.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823-825, 13. Aufl, Berlin, 1999 (인용: Staudinger/집필자).
- Jauernig, Othmar(Hrsg.),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München, 2007 (인용: Jauernig/집필자).
- Kloepfer, Michael/Brandner, Thilo, *Umweltrecht*, 3. Aufl., 2004.
- Kötz, Hein/Wagner, Gerhard, *Deliktsrecht*, 12. Aufl., München, 2013 .
- Krüger, Wolfgang/Westermann, Harm Peter (Redakteure),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3 Schuldrecht · Besonderer Teil §§ 433-610, München 2008 (인용: MünchKomm/집필자).
- Landsberg, Gerd/Wilhelm, Lüllin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Köln, 1991 (인용: Landsberg/Lülling, UmweltHR).
- Larenz, Karl/Canaris, Claus-Wilhelm,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2, 13.

- Aufl., München, 1994 (인용: Schuldrecht II/2).
- Lytras, Theodor,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Umweltschäden*, Berlin, 1995 (인용: Haftung).
- Magnus, Ulrich, Comparative Report on the Law of Damages, in: ders.(Ed.), *Unification of Tort Law: Damages*, Den Haag, 2001.
- Marburger, Pet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öffentlichen Rechts*. Gutachten C für den 56. Deutschen Juristentag, München, 1986 (인용: Gutachten).
- Martinek, Michael(Redaktor),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433-487, Berlin, 2004 (인용: Staudinger/집필자).
- Medicus, Dieter, *Bürgerliches Recht*, 19. Aufl., München, 2002.
- Mitgliedern des Bundesgerichtshofes(Hrsg.), *Das Bürgerliche Gesetzbuch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Reichsgerichts- und Bundesgerichtshofes*, Band III 1. Teil, Berlin, 1979 (인용: RGRK/집필자).
- Mühl, Otto(Redakteur),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Band 6 Sachenrecht(§§ 854-1296), Stuttgart, 1989 (인용: Soergel/집필자).
- Rosenberg, Leo/Schwab, Karl Heinz/Gottwald, Peter, *Zivilprozessrecht*, 16. Aufl., München, 2004.
- Rinne, Manfred Eberhard(Redakteu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6 *Sachenrecht* §§ 854-1296, München 2004 (인용: MünchKomm/집필자).
- Salje, Peter/Jörg, Peter, *Umwelthaftungsgesetz: UmweltHG*, 2. Aufl., München, 2005.
- Schwab, Karl-Heinz/Prütting, Hanns, *Sachenrecht*, München, 1999.
- Strunden, Stefan, *Altlasten - Ansprüche des Grundstückseigentümers im Spannungsfeld zwischen öffentlichem und zivilem Recht*, Dissertation Köln, 1991 (인용: Altlasten).

- von Bar, Christian, *Verkehrspflichten: Richterliche Gefahrsteuerungsgebote im deutschen Deliktsrecht*, Köln, 1980.
- Weber, Klaus(Hrsg.), *Rechtswörterbuch*, 16. Aufl., München, 2000.
- Westermann, Harm Peter/Gursky, Karl-Heinz/Eickmann, Dieter, *Sachenrecht*, Heidelberg 1998.
- Westermann, Harm Peter(Hrsg.),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2. Band, Münster 2000 (인용: Erman/집필자)
- Westermann, Harm Peter(Hrsg.),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2. Band, Münster 2008(인용: Erman/집필자)
- Wieling, Hans Josef, *Sachenrecht*, Berlin, 2001.
- Arens, Peter, Dogmatik und Praxis der Schadensschätzung, *ZZP* 88(1975), 1 ff.
- Baumgärtel, Gottfried, Anmerkung zum BGH-Urteil v. 18.9.1984 -VI ZR 223/82 (Kupolofen-Urteil), *JZ* 1984, 1109 ff.
- Hager, Günter, Umweltschäden - ein Prüfstein für die Wandlungs- und Leistungsfähigkeit des Deliktsrechts, *NJW* 1986, 1961 ff.
- Hübner, Ulrich, Haftungsprobleme der technischen Kontrolle, *NJW* 1988, 441 ff.
- Köndgen, Johannes, Überlegungen zur Fortbildung des Umwelthaftpflichtrechts, *UPR* 1983, 345 ff.
- Koziol, Helmut, Die “Principal of European Tort Law” der European Group on Tort Law”, *ZEuP* 2004, 234 ff.
- Landsberg, Gerd/Lülling, Wilhelm,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DB* 1990, 2205 ff.
- Marburger, Peter/Hermann Heinrich, Zur Verteilung der Darlegungs- und Beweislast bei der Haftung für Umweltschäden, *JuS* 1986, 354 ff.
- Medicus, Dieter, Zivilrecht und Umweltschutz, *JZ* 1986, 778 ff.
- Mühl, Otto, Wahrscheinlichkeitsurteile, Prognosen und Kausalitätsfragen im privaten und öffentlichen Recht, in: *FS Hermann Lange zum 70.*

Geburtstag, Stuttgart, 1992, 582 ff.

Röthel, Anne, Gefährdungshaftung, *JURA* 2012, 444 ff.

von Seiler, Hans Hermann, Tierhalterhaftung, Tiergefahr und Rechtswidrigkeit,
in: *FS für Zeuner*, 1994, 279 ff.

Walter, Gerhard, Anmerkung zum BGH-Urteil vom 16.12.1977 (Fluorabgasfall),
NJW 1978, 1158 ff.

[Abstract]**Voraussetzung und Beschränk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nach dem Umwelthaftungsgesetz**

Ahn, Kyung Hee

(Professor of Law, Kookmin University)

Ziel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es, die Voraussetzung und die Beschränk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nach dem Umwelthaftungsgesetz (UmweltHG) vom 31. Dezember 2014 darzustellen und kritisch-systematisch zu erörtern.

Zweck des UmweltHG ist in erster Linie der Schadensausgleich in Form des Geldersatzes (§ 1 UmweltHG). Die Anspruchsgrundlage dieser außervertraglichen Schadensersatzhaftung ist § 6 UmweltHG, der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für die Umwelt besonders gefährliche Anlagen ('Gefährdungshaftung') einführt. In Vergleich zur Verschuldenshaftung nach § 823 BGB ist die Gefährdungshaftung eine strengere Haftung, weil sie Ersatzpflichten unabhängige vom Rechtswidrigkeit und Verschulden begründet. Dem Geschädigten wird hierdurch die Verfolgung seiner Ansprüche erleichtert. Auch in bezug auf den Nachweis der Verursachung eines Schadens werden dem Geschädigten Beweiserleichterungen gewährt (§ 9 UmweltHG). Ist der Betrieb einer Anlage im Einzelfall geeignet, den konkret eingetretenen Schaden zu verursachen, so wird vermutet, dass der Schaden durch den Betrieb dieser Anlage verursacht worden ist (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

Für Art, Inhalt und Umfang des Schadensersatzanspruchs gelten auch bei der Gefährdungshaftung grundsätzlich die §§ 393 ff. BGB vor. Ersatzberechtigt ist der unmittelbar Verletzte, d.h. jeder, dessen Körper oder Gesundheit verletzt oder dessen Sache beschädigt worden ist. Der Ersatzpflichtige ist der Betreiber

der Anlage. Um dem Interesse des Ersatzpflichtigen an einer wirtschaftlichen Vorhersehbarkeit und Versicherbarkeit des Haftungsrisikos angemessen Rechnung zu tragen, statuiert §7 S. 1 UmweltHG die Haftungshöchstgrenzen. Danach haftet der Ersatzpflichtige für Umwelteinwirkung insgesamt nur bis zu einem Höchstbetrag von 200 Milliarden Won.

주 제 어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시설책임, 시설사업자, 인과관계 추정, 책임최고한도

Schlüsselwörter Schadensersatzhaftung, Haftungsbeschränkung,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Gefährdungshaftung, Anlagenhaftung, Betreiber der Anlage, Ursachenvermutung, Haftungshöchstbetrag